

자 체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자치행정국」 실국 감사 —

2021. 9.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권고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8건	2	6	0	1	789	-	-	-	-
1	○○○○과	○○○○ ○○분사기 관리 적 부	1								
2	○ ○ 과	○ ○ ○ ○ 정 보 개 발 원 자 수 교 육 신 청 미 수 료 환 ○ ○ 비 미 환	1			1	789				
3	○ ○ 과	공공조달 ○○ 구매카드 미사용		1							
4	○○○○○○과	지 방 계 약 법 위 반		1							
5	○○○○과	2018 ○○교육 및 ○○현장 체험 지원 지출 부 적 정		1							
6	○○○○과	원 천 세 미 징 수		1							
7	○○○○○○과	○ ○ ○ ○ ○ 대 학 운 영 정 ○ ○ 수 당 지 급 부 적 정		1							
8	○○○○과	○○○○역량 ○○-○ 프 로 그 램 예 산 집 행 기 준 미 준 수		1							

2. 처분요구일람표

1. ○ ○ ○ ○ ○ ○ 분 사 기 관 리 부 적 정 (시정) 4
2. ○ ○ ○ ○ 정보개발원 교육신청 미수료자 ○ ○ 비 미환수 (시정) 8
3. 공 공 조 달 ○ ○ 구 매 카 드 미 사 용 (주의) 10
4. 지 방 계 약 법 위 반 (주의) 13
5. 2018 ○ ○ 교육 및 ○ ○ 현장 체험지원 지출 부적정 (주의) 17
6. 원 천 세 미 징 수 (주의) 21
7. ○ ○ ○ ○ ○ ○ 대학 운영 ○ ○ 수 당 지급 부적정 (주의) 24
8. ○ ○ 교육역량 ○ ○ - ○ 프로그램 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주의) 27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분사기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청사(廳舍)를 방호할 목적으로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분사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 분사기 관리 부적정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는 ○○○○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는 기능 및 작동가능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신속히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고장 시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직무수행시 휴대하는 △△△△기의 약제통 유효기간(1년)을 점검한 결과, [표 1] “△△△△기 허가 현황” 과 같이 약제통 제조일자가 2018년 5월로 유효기간이 감사일 현재까지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약제통을 교체하지 않고 △△△△기에 계속 장착하여 휴대하고 있었다. 가스분사기의 약제통은 소모성 제품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 특성상 내장된 액체가스의 미세한 자연 누출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교체주기에 맞게 교체 해주어야 한다.

[표1] △△△△기 허가 현황

연번	총 종	명 칭	제조번호	허가번호	제조일자 (약제통)	비 고
합계	12정					
1	△△△△기	㉠리스-2	△△△△180005◆●	2㉠●5	2018. 5.	
2	△△△△기	㉠리스-2	△△△△180005◆●	2㉠●6	”	
3	△△△△기	㉠리스-2	△△△△180005◆●	2㉠●7	”	
4	△△△△기	㉠리스-2	△△△△180005◆●	2㉠●8	”	
5	△△△△기	㉠리스-2	△△△△180005◆●	2㉠●9	”	
6	△△△△기	㉠리스-2	△△△△180005◆●	2㉠●0	”	
7	△△△△기	㉠리스-2	△△△△180005◆●	2㉠●1	”	
8	△△△△기	㉠리스-2	△△△△180005◆●	2㉠●2	”	
9	△△△△기	㉠리스-2	△△△△180005◆●	2㉠●3	”	
10	△△△△기	㉠리스-2	△△△△180005◆●	2㉠●4	”	
11	△△△△기	㉠리스-2	△△△△180005◆●	2㉠●5	”	
12	△△△△기	㉠리스-2	△△△△180005◆●	2㉠●6	”	

2. ●●●●기 변경신고 불철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에 따르면 ○○ 등을 위하여 법인의 종업원이 ●●●●기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기 등의 수량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포화약법」 제65조(허가증 등) 제3항과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9조(허가증 등의 기재사항변경)에 따르면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은 보유 수량, 사용자,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기 최종 허가신고(2018. 9.13.) 이후 변경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2] 사용자(●■●■) 변경 명단과 같이 보유 수량·사용자·주소지 등이 변경 되었음에도 변경신고 없이 가스분사기를 운용하였다.

[표2] 사용자(●●○○) 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변동사유	변동일자
합계	12명				
1	○○○	△30◇0 <	□□ ○○구 △실로 ○○, ◇◇마을 이하 생략	■□■□원	2019.1.1.
2	○○○	△10◇2 <	□□ ○○구 △서서로○○길 이하 생략	■□■□원	"
3	○○○	△90◇1 <	□□시 노◎길 ○○○ 이하 생략	퇴직	2019.2.11.
4	○○○	△70◇0 <	▣▣군 ◆◆면 ■무로 ○○ 이하 생략	퇴직	2020.10.5.
5	○○○	△20◇0 <	□□ ◇구 공▽로15길 ○ 이하 생략	퇴직	2020.12.1.
6	○○○	△00◇1 <	▣▣군 ■■면 양●로 ○○ 이하 생략	퇴직	2021.2.22.
7	○○○	△21◇0 <	●● ●●시 길◆길 ○○○-○○ 이하 생략	신규	2021.3.1.
8	○○○	△51◇2 <	▣▣ ▣▣시 ◇◇면 건△길 ○○ 이하 생략	"	"
9	○○○	△30◇0 <	◇◇ ◀◀시 백●동로 ○ 이하 생략	"	"
10	○○○	△80◇2 <	●● ○○시 송<○길 ○○ 이하 생략	"	"
11	○○○	△10◇1 <	▣▣▣▣시 어■■윗길 ○○-○ ◎◎아파트 이하 생략	●●학교	2021.3.2.
12	○○○	△20◇2 <	◇◇군 ◆◆읍 재■길 이하 생략	퇴직	2021.4.15.

조치할 사항 ■■■■과장은

- ① 유효기간이 지난 ●●●●기 약제통은 교체하시고, 관련 법령에 따라 ●●●●기 허가사항 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정보개발원 교육신청 미수료자 ■■■비 미환수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및 「경상북도 국내외위탁교육 훈련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사이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8년 8월 사이버교육 수강신청 안내」 ◆◆◆◆정책관-▷▷00(20◆◆. ▷. ▷.)호 등 매월 수강신청 안내 공문에 의하면 위탁기관인 △△△△정보개발원에 온라인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 전액을 ◆◆◆◆정책관, ◆◆과 예산으로 선 부담하고, 사이버교육 미이수시 수강료는 교육생 본인부담 조치 및 향후 교육신청을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2018. 1. 1.부터 2021. 4. 30.까지 사이버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비 환수조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정보개발원 사이버교육 (유료)과정 미수료에 따른 교육비 미환수자 명단” 과 같이 사이버교육과정 미수료자에게 ◆◆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 ▲▲▲▲6급◆◆ 등 미수료자 15명에 대한 ■■■비 789,570원을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㉔㉔㉔㉔정보개발원 사이버교육 과정(유료) 미수료에 따른 ◇◇비 미환수자 명단

연번	교육년월	교육 과정명	현)소속부서	직급	성명	환수대상 금 액 (원)
		계			15명	789,570
1	'18.8월	[KLID]에듀윌 [2018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기본이론(참고도서제공)	㉔㉔㉔㉔과	▲▲▲▲ 6급	○○○	74,700
2	'18.8월	[KLID][전화영어]U Can Talk 초급 1-1(1회 10분 횟수무제한)[스마트러닝]	㉔㉔㉔과	㉔㉔6급	○○○	100,800
3	'18.8월	[KLID]월급으로 부자되기! 사회초년기 재무설계[스마트러닝]	○○○○관	㉔㉔6급	○○○	32,400
4	'18.8월	[KLID]기획의 별! 스타이론으로 쓰는 한 장짜리 기획서[스마트러닝]	●●●●과	㉔㉔6급	○○○	45,000
5	'19.2월	[KLID]디자이너를 위한 Photoshop CS4	○○○○과	○○8급 (○○○○)	●●●	46,350
6	'19.3월	[KLID][워드프로세서] 실기(한글 2010) 이론+문제풀이 (2018개정)[스마트러닝]	◆◆◆◆과	◇◇6급	●●●	22,050
7	'19.4월	[KLID][2019 공인중개사]민법 기본이론(참고도서제공)	◇◇과	◆◆6급	●●●	72,000
8	'19.11월	[KLID]달용 대리의 백만인과 소통하는 SNS 노하우[스마트러닝]	●●●●담당관	<<5급	●●●	45,000
9	'19.11월	[KLID]독학 토익 Listening 기초 세우기 2[스마트러닝]	○○○○○○과	<<7급	<<<	33,750
10	'20.1월	[KLID][전화영어]The World Times (주2회 20분) (영자월간지제공)[스마트러닝]	●●●●과	<<6급	▲▲▲	93,600
11	'20.1월	[KLID][2019 공인중개사]민법 기본이론(참고도서제공)	㉔㉔㉔㉔소	<<5급	▲▲▲	72,000
12	'20.3월	[KLID][최신개정] 신공략 중국어 기초 1[스마트러닝]	○○○○과	<<6급	△△△	43,830
13	'20.3월	[KLID]1일 10분으로 끝내는 왕초보영어 탈출-듣기 step1[스마트러닝]	○○○○과	○○6급	△△△	37,620
14	'20.5월	[KLID]나의 겁 없는 중국출장 중국어 출장편 1[스마트러닝]	㉔○○○○ ▲▲▲▲과	○○6급	▷▷▷	43,830
15	'20.5월	[KLID]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1)_경제학의 10대원리[스마트러닝]	○○과	▲▲7급	◇◇◇	26,640

조치할 사항 ●●과장은

미수료자 15명에 대한 ◆◆비 789,570원을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조달 ●● 구매카드 미사용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차량운행, 청사관리(미화, 조경) 등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관용 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 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¹⁾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석유제품의 구매력을 통합하여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수요 ‘차량용 유류 및 소규모 저장용(2만리터 이하) 유류’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SK네트웍스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현장 할인을 5.74%, 포인트 적립금 1.1%로 전국 협약주유소를 통해 공급하였고, 2019년 2월부터 GS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현장 할인을 3.04%, 포인트 적립금 1.1%로 전국 협약주유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 공공운영비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1) 조달청에서 공개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의 유가 확인이 가능

그런데, 위 부서의 차량용 유류 구입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내역” 과 같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법인카드로 4,784 천 원의 차량용 유류를 구입하였다.

그 결과, 차량용 ○○ 구매와 관련하여 예산절감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공공조달 ●●구매카드 미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자	유종	수량(ℓ)	단가(원)	금액(원)	주유 차량
합계					4,784,000	
1	2020. 2. 25.	경유	718	1,378	990,000	○○조□□□□, ▣▣가○○○○, ●●◇◇루▷▷▷▷, ◇◇구ⓂⓂⓂⓂ
2	2020. 5. 22.	"	800	1,065	852,000	"
3	2020. 9. 7.	"	750	1,145	858,750	"
4	2020. 11. 10.	"	750	1,115	836,250	"
5	2021. 1. 27.	"	700	1,220	854,000	"
6	2021. 4. 9.	"	300	1,310	393,000	○○조△△△△, □□■□루□□□□, ▽▽가◇◇◇◇, ●●구○○○○, ㉠누㉡㉢㉣

조치할 사항 ●●과장은

- ①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계약법 위반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진흥 및 민간협력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과 민간보조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연도	사 업 비			주요 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계	3개단체		295,284	271,000	24,284		
○○문화계승 및 간행물을 통한 교화	(사)□□□	2019	37,650	30,000	7,650	- ㉠㉠대전 및 ▽▽지 발간	
		2020	29,700	24,000	5,700	- □□지 발간	
▮▮▮▮▮▮▮▮ 경상북도대회	○○○○○○○○ 경상북도협의회	2018	23,794	23,000	794	- 유공자표창, 강연 등	
경북도민 ●● <<<	경상북도 ○○○회	2019	51,340	50,000	1,340	- 백일장, 축하공연 등	
경상북도●●●● ●●●●대회	경상북도 ○○○회	2018	76,400	72,000	4,400	- 의식행사,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등	
		2019	76,400	72,000	4,40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1.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아닌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업체를 결정·계약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사)□□□□ 등에서 책자 발간, 도대회 행사대행업체를 선정·계약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지 않고 아래 [표 2] 와 같이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지방계약법 준수 관련 지도·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현황

용역명	계약일	단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방법	비고
계		2개단체		71백만원		
책자 발간	2019.10.21.	(사)◇◇◇	도서출판◇◇ (○○○)	24백만원	1인견적 수의계약	
책자 발간	2020.10.7.	(사)◆◆◆	도서출판●● (○○○)	24백만원	1인견적 수의계약	
□□□□□□운동본부 도대회 행사대행	2018.12.1.	□□□□□□운동 경상북도협의회	◇◇커뮤니케 이션즈(◆◆◆)	23백만원	1인견적 수의계약	

2. 행사용역 분할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경쟁하여야 하고, 임의로 추정가격을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을 준수토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경상북도■■■■에서 [표 3]과 같이 행사대행업체를 계약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지 않고 건당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1인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표 3】 경상북도 ■■■■■ 분할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단체명	용역명	계약업체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계	3개사업	1개단체				130,000	
1	2019년 ◇◇◇◇	경상북도 ●●●●	⓪⓪⓪⓪⓪행사 (레크레이션, 축하공연 등)	▽▽▽ ⓪⓪방송 (△△△)	2019.9월	10,500	30,000
2	◆◆◆◆당	경상북도 ●●●●	"/ (부스설치, 음향, 현수막 등)	▲▲ (●●●)	2019.9월	19,500	

3	2018년 경상북도 □□□□□□□□대회	경상북도 ◇◇◇회	▣▣▣▣▣▣ 대회 행사 대행 (행사진행, 기획 등)	▣▣커뮤니케이 션즈(◆◆◆)	2018.11월	19,870	50,000
4		경상북도 ◇◇◇회	" (음향, 조명 등)	●● ◇◇◇◇ (○○○)	2018.11월	11,100	
5		경상북도 ◇◇◇회	" (무대설치 등)	◇△ ▲▲▲ (▲▲▲)	2018.11월	19,030	
6	2019년 경상북도 □□□□□□□□대회	경상북도 ●●●회	▣▣▣▣▣▣ 대회 행사 대행 (음향, 조명 등)	○○커뮤니케이 션즈(▲▲▲)	2019.11월	16,820	50,000
7		경상북도 ●●●회	" (무대, 영상 등)	㈜●● (●●●)	2019.11월	18,750	
8		경상북도 ●●●회	" (현수막, 공연 등)	㈜●●● (㊦㊦㊦)	2019.11월	14,430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18 □□교육 및 ■■현장 체험지원 지출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교육 및 □□현장 체험 지원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경상북도◇◇◇◇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경상북도◆◆◆◆회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 업 비			주요 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2018년 ●●교육 및 ◇◇현장 체험 지원	경상북도 ○○○○○회	39,877	32,400	7,477	- ㉠ ㉡ ㉢ ㉣ 학교 견학 - □□ ●●기념관 견학 등	

1. 지출 서류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48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지출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회에서는 [표 2]와 같이 모자구입, 버스임차료 등 지출을 하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구입 물품 및 임차 수량, 사용처 등)을 작성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 차량임차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회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하였으며, 카드영수증, 사진 외에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과에서는 보완 등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산 확정된 사실이 있다.

【표 2】 ○○○ 교육 및 ○○○ 현장체험지원 주요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지출내역	지출일자	지출금액	산 출 내 역	증빙서류	비고
계	3건		24,000			
1	△△구입 (◆◆사)	18.9.4.	3,240	- ◆◆ ◆◆명*6,000원	카드영수증, 사진	
2	○○임차료 (○○○○투어)	18.9.11.	13,200	- ○○ ○○대 *1,100,000원	카드영수증	
3	●●● 구입 (한◆◆◆◆)	18.9.14.	7,560	- ◆◆ ◆◆개 *7,000원	카드영수증	

※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2. 원천세 미징수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 제3호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도를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²⁾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관련세법에 따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정산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회에서는 2018년 ○○교육 및 ○○현장 체험·견학을 추진하면서 166,000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100분의 70을 공제한 금액의 20%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부과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10%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경상북도○○○○회에서 ●●● 외 2명의 강사 수당 총 1,110,000원을 지급하면서 [표 3]과 같이 소득세 66,600원, 지방소득세 6,660원 총 73,26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는데도 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의 강사수당 원천징수 미공제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없이 보조금액을 확정된 사실이 있다.

[표 3] 2018년 경상북도○○○○회 원천징수 미공제 현황

(단위 : 원)

연번	예금주	이체 일자	지급내용	총 지급액	미공제 원천세			정당한 지급액
					합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3명			1,110,000	73,260	66,600	6,660	1,036,740

2) 필요경비 공제율 : ~ '18년 3월(80%) / '18년 4월~12월(70%) / '19년 1월~ 현재(60%)

1	■■■■	9.27.	강사수당	370,000	24,420	22,200	2,220	345,580
2	■■■■	9.27.	"	370,000	24,420	22,200	2,220	345,580
3	■■■■	9.27.	"	370,000	24,420	22,200	2,220	345,58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지출 시 관련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각종 수당의 원천징수 납부가 이행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 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³⁾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관련세법에 따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정산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회에서는 2018~2019년 경상북도 ◆◆◆◆◆◆◆◆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66,000원('19.1.1.이후는 125,000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100분의 70('19.1.1.이후는 100분의 60)을 공제한 금액의 20%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부과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10%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회에서 ○○○ 외 4명의 사회자수당 등 총 2,600,000원을 지급하면서 [표2] 와 같이 소득세 166,000원, 지방소득세 16,600원 총 182,60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는데도 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의 사회자수당 등 원천징수 미공제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 없이 보조금액을 확정된 사실이 있다.

[표2] 2018~2019년 원천징수 미공제 현황

(단위 : 원)

연번	예금주	이체 일자	지급내용	총 지급액	미공제 원천세			정당한 지급액
					합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3) 필요경비 공제율 : ~ '18년 3월(80%) / '18년 4월~12월(70%) / '19년 1월~ 현재(60%)

계	5명			2,600,000	182,600	166,000	16,600	2,417,400
1	㉸㉸㉸	18.10.11.	사회자수당	1,500,000	99,000	90,000	9,000	1,401,000
2	㉸㉸㉸	"	식전공연	300,000	19,800	18,000	1,800	280,200
3	㉸㉸㉸	"	사회자수당	300,000	19,800	18,000	1,800	280,200
4	㉸㉸㉸	19.4.12.	강사수당	200,000	17,600	16,000	1,600	182,400
5	㉸㉸㉸	19.7.1.	식전공연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자료 : 경상북도 ㉸㉸㉸㉸과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보조사업자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각종 수당의 원천징수 납부가 이행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대학 운영 ㉠㉠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우수 ◇◇◇◇◇자 양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위해 [표 1]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1】○○○○○자대학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사업자	사 업 비			주요 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2019	●●대학교 △△교육원	100,000	100,000	0	- 우수 ○○○○○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2018	●●대학교 ○●교육원	50,000	50,000	0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상북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외래강사의 수당은 지방자치□□□□□□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지방자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보면 “공직자 등”의 강사가 1급일 경우 최초 1시간은 25만원, 초과 매시간당 1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 등”이 받는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여,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 청탁금지법 제2조2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제외

또한,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시 지급 기준과 단가를 道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단가(지방자치■■■■ 강사수당 지급 기준 준용)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수당 지급시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에서는 2018년 ○○대학교 ○○교육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道에서 적용하는 강사수당 기준단가를 적용(道 : 1급 강사 2시간 강의시 37만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총장 결재를 득하여 자체 기준단가를 적용한 결과 [표2]와 같이 道기준단가 적용 대비 총 1,482천 원(총 19건)의 강사수당을 과다하게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2019년 ■■대학교 ■■교육원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은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강사수당 외 원고료 156천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정산보고했으나, 시정 등 조치없이 보조금을 확정하였다.

[표 2] 道기준 대비 과다지급된 강사수당·원고료 내역

(단 위 : 천 원)

연도	보조사업자	일자	시간	지급대상		지급내역			道기준 적용시 지급액 (1급)	절감 가능액
				소속·직위	성명	계	강사수당	원고료		
총계				20회		9,038	9,252	156	7,400	1,638
2019	◇◇◇◇ 대학교 ○○ 교육원	6.19	2 시간	◇◇◇◇ ▷▷▷재단 선임연구위원	■■■■	526	370 (최초 1시간 250 + 초과 1시간 120)	156	370 (원고료 지급불가)	156
2018	●● 대학교 ●● 교육원	소계		19회		8,512	8,512	-	7,030	1,482
		3월	2 시간	■■■대 교수	▷▷▷	448	448 (시간당 224 x 2시간)	-	370	78
				■■■대 교수	◇◇◇	448	448	-	370	78
				■■■대 교수	◆◆◆	448	448	-	370	78
				■■■인	●●●	448	448	-	370	78

			○○○○○○○○ 연구소 소장	◆◆◆	448	448	-	370	78
	4월	2 시간	경북○○○○회	▨▨▨	448	448	-	370	78
			경북▷▷▷▷관	▣▣▣	448	448	-	370	78
			○○대 교수	▨▨▨	448	448	-	370	78
			○○대 교수	▣▣▣	448	448	-	370	78
			○○○○○○○○ 재단 연구원	▨▨▨	448	448	-	370	78
			△△△△△△ 연구소 소장	▣▣▣	448	448	-	370	78
	5월	2 시간	○○대 교수	▨▨▨	448	448	-	370	78
			○○대 교수	▣▣▣	448	448	-	370	78
			□□□□ 연구소 대표	▨▨▨	448	448	-	370	78
			○○○○○○○○ 연구소 소장	▣▣▣	448	448	-	370	78
			경북○○ □□원 원장	▨▨▨	448	448	-	370	78
			○○대 교수	▣▣▣	448	448	-	370	78
			○○대 교수	▨▨▨	448	448	-	370	78
			○○대 교수	▣▣▣	448	448	-	370	78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보조사업자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집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교육역량 ○○-㉠ 프로그램 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산업체와 연계교육 운영 및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대학교 ㉠㉠협력단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1】 □□□□대 ◆◆협력단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연도	사 업 비			과 목	주요 내용	비고
		계	도비	기타			
△△교육역량 ●●-○ 프로 그램	2020	300,000	300,000	0	민간경상보조	- 프로그램 ◇◇금 지원 - ○○환경 개선 및 확충 - 현장 연수지원	
	2019	300,000	300,000	0			

「경상북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되어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라 되어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대학교 <<협력단이 보조금 집행시 예산과목별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토록 지도·관리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에서는 ◆◆◆◆대학교 <<협력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예산과목별 집행기준에 의거 자본적 경비를 집행할 수 없는데도, ◆◆◆◆대학교 <<협력단에서는 2년간 [표 2]와 같이 ○·○○기 구입,

㉠㉠㉠·◆◆◆PC 등 기자재 구입,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 등 170,945천 원(총 19건)의 자본적 경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어,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자본적 경비를 집행한 내역

연도	지출일	집행 내역(구입 내역)	금액(천원)	비고
계		19건	170,945	
2020	소계	12건	120,247	
	2020.7.6	◆◆◆기 구입	39,695	
	2020.8.5	원격◇◇ 강의용 ◇◇◇PC 구입(○대)	3,472	
	2020.12.29	●●●기 교체에 따른 전원설치 공사	1,700	
	2021.1.12	하반기 ●●●기 구입	16,000	
	2021.1.20	비대면 교육기자재 구입(◇◇◇, ◇◇◇, ●●●●, △△△ 등)	21,500	
	2021.1.22	비대면 교육지원 기자재 구입(전자□□기)	3,080	
	2021.1.28	비대면교육 연계 분전함 설치, 전등회로분리 공사	2,200	
	2021.2.3	●●●과 기자재 확충(●●● 구입)	9,500	
	2021.2.9	●●●●과 기자재 확충(●●● 구입)	5,000	
	2021.2.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집기구입(◇◇◇, ●●●, ㉠㉠㉠ 등)	10,400	
	2021.2.23	비대면 교육 기자재 구입(◆◆◆, ◇◇◇ 등)	5,300	
	2021.2.23	비대면 교육 기자재 구입(◆◆◆PC, ▷▷, △△△)	2,400	
2019	소계	7건	50,698	
	2019.8.20	기자재 구입(◆◆◆)	9,964	
	2019.8.27	기자재 구입(◇◇, ◇◇, ◇◇)	2,794	
	2019.9.6	기자재 구입(●●●)	4,500	
	2019.9.10	강의실 및 유희공간 리모델링 공사	20,890	
	2019.9.20	기자재 구입(●●●)	3,000	
	2019.9.26	기자재 구입(㉠㉠㉠PC, ㉠㉠, ㉠㉠)	7,450	
	2019.11.22	기자재 구입(㉠㉠, ㉠㉠, ㉠㉠)	2,100	

조치할 사항 ㉠㉠㉠과장은

-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예산과목별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토록 지도·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